◆ 교육칼럼 ◆

아름다운 마무리, 새로운 마음가짐.

Beautiful ending, fresh mind

Ⅰ. 한 학년을 마치며...

학교에서의 2월은 '마무리'의 달입니다.

1년 동안 함께 했던 선생님과 친구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공간들과 시간들을 정리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의 시간들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슴 속에 남길 수 있도록 남은 시간동안 더 많은 사랑과 정을 표현하는 시간들을 보내길 바랍니다.

한편, 학교에서의 2월은 '준비'의 달이기도 합니다. 신입생들의 반편성고사와 2,3학년들의 새로운 반편성 등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학년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멋지게 출발할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학교의 경우 2월 11일은 졸업식, 2월 12일은 종업식입니다.

본교에서 열정과 노력과 추억을 함께 하며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온 3학년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며 더 멋진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한 학년을 마무리 짓는 1,2학년 학생들의 종업을 축하하며, 한층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2월 13일부터 봄방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월 13일~2월 15일은 설 연휴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라며, 봄방학은 새학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알차고 의미있게 보내길 바랍니다.

Ⅱ. 새롭게 결심하며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길…

스물 세 살 청년시절, 링컨의 꿈은 대통령이 아니었다. 그는 오직 '존경받는 삶'을 살겠다는 '단 하나의 결심'을 실천에 옮기고자 노력했을 뿐이다. 그 결과 그는 가장 존경받는 미합중국 대통령이 되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존재한다. 단 하나의 결심을 가진 사람과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이다. 단 하나의 결심을 가진 사람은 놀랍고 경이로운 삶을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저 그런 평범한 삶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다. -주디스 라이트의《단 하나의 결심》중에서

자신만의 인생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되는 대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표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좌우한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향해 도전하고 노력할 수 있는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봄 방학 기간을 자신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의미 있고 알찬 시간들로 채워나가길 바랍니다.

김광석 부천계남중학교 교장

지상선언

'밀고 당기기 식' 논란, 지급 늦는 관행 없어져야

교과부의 '교원성과급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는 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단위 교원성과급제 도입', '2010년 교원성과급 차등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교원성과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학교 현실과 교원정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방안으로 평가한다. 한국교총은 교원성과급제가 교원으로 하여금 학생교육에 매진케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열심히 교육한 교원이 우대받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구현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교과부는 현장교원의 충분한 여론수렴은 커녕 형식적인 협의 절차만 거친 채 성과급의 차등 폭 확대와 학교단위 집단 성과급제를 도입을 발표함으로써 교원간·학교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데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특히, 현행 학교의 순환근무제 상황에서 '학교단위 집단성과급제'가 도입될 경우 학교여건 및 학생의 학력수준, 학부모의 기대수준 등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교육낙후지역 및 학교의 기피현상이 나타나 교육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우려는 '학교단위 집단성과급제'와 관련 지난 해 9월, 한국교총이 전국 유·초·중등 교원 5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009.9.7-9, 교사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교원의 72.7%가 '반대'하였고, '찬성'한 교원은 2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데 서도 확인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원 성과급을 둘러싸고 지난 10년간 매년 '밀고 당기기 식'의 논란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되며 교과부가 현장 여론을 토대로 근본적 개선점을 마련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가 교직사회의 활력을 주고, 교원의 사기진작 등 그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금번과 같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학교현장과 소통되지 않는 정책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동정책의 종합적 계획을 제시하라

지난 12월 31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청소년 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다.

이로 인해 2008년부터 아동·청소년·사회복지계 등이 논의하고 합의 하던 아동·청소년 통합이 전면 백지화되었다. 이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은 정부의 아동 및 청소년 정책이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채 원칙과 계획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원칙 없이 진행되는 정부의 아동정책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정책 종합계획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 확보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아동청소년정책을 추진해 왔던 보건복지가족부 내의 조직과 인원 등을 아동정책부서로 전환하여 존치해야 하며, 아동관련 법률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원칙 없이 진행되는 아동정책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미래를 담보로 이길 수 없는 도박을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이며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이며 일꾼이라는 허울뿐인 목소리가 아닌 실질적인 아동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교육법률산책 ◆

학원 운영자에게도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가 있을까?

김도현 변호사
dhkim@shinkim.com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9)
북경화공대학 연수(1998)
한국해양대학교 항만물류 최고경영자과정 수료(2007)
상해 화동정법대학 연수(2008)
<경력>
제39회 사법시험 합격(1997)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2001)
前 검사(부산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등)
現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2009~)
저서 : '중국반독점법'(2009, 법문사)

초등학교 1학년생인 A는 매일 방과 후에 B학원에서 속셈, 피아노 등을 배워오던 중 어느 날 피아노실에서 수업을 마친 후 주산 강의실로 이동하여 수업준비를 하다 학원 밖으로 나가 우산을 쓴 채 위 이면도로를 횡단하던 중 승합차에 치여 사망하게 되었다.

위 학원이 입주해 있는 상가건물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고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시장 앞 이면도로에 접하여 있는데, 학원 수강생들은 평소 수업 중간의 쉬는 시간 등을 이용하여 학원 밖으로 나가 인근 상가의 문방구나 분식집 등에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학원 측에서도 이를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았다.

이 경우 A의 부모들은 교통사고를 낸 승합차 운전자 이외에 B학원 운영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유치원이나 학교의 원장·교장 및 교사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유치원생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학원이나 교습소의 운영자 또한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를 지는지에 대하여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을 것이다.

본건과 같이 쉬는 시간에 학원생이 임의로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까지 학원측에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학원 운영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발생한 위 사건에서 원심 판결은 '학원 측이 학원 직원이나 강사를 출입문에 배치하여 출입하는 수강생들을 일일이 통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학원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우리의 교육현실상 각종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사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형태의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당해 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망인(사망자)은 불과 만 6세 10개월 남짓의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서 판단능력과 사리분별력이 크게 부족하였으며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한 경험도 많지 않은 상태였고 더욱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계속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위 학원에 다니면서 학원에서 운행하는 차량으로 통학을 하여 왔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학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교습활동뿐만 아니라 망인이 학원차량에 승차한 때로부터 학원에 도착하여 수업을 마친 후 다시 학원차량을 타고 가서 부모가 미리 정해준 장소에 내림으로써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생활관계가 모두 학원의 교습활동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학원의 운영자이자 교습자인 피고로서는 그 사이의 생활관계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망인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이와 같은 보호·감독의무에는 망인과 같은 어린 학생이 수업 중간의 쉬는 시간에 함부로 학원 밖으로 나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평소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외출을 통제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호 판결).

물론 본건에서 학원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책임의 범위는 상당 부분 제한된다.

다만 설사 책임이 90% 가량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위 판결은 학원 운영자들에게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학원 운영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본 기고문 또는 교육 관련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본지 담당 기자(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